

수원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가단1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6. 8. 접수 제12149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곽동우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배 과수원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과일봉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5. 6. 3. 피고가 공급하는 물품에 관하여 물품공급구매계약 체결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5.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위 계약에 기하여 같은 달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3. 증거서류인 강제2호증 화해권고결정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000,000원을 변제하고 피고는 돈을 지급 받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원고는 증거서류인 강제3호증 예금거래내역서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금 12,000,000원을 입금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피고 회사의 임원이자 아들인 D의 개인 계좌에 2017. 12. 20. 각 6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송금을 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사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사망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면 당사자표시 경쟁 신청을 하겠습니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1,200만원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고 있어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화성시 대 268평방미터
2. 화성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99.33평방미터
3. 화성시 대 54평방미터

